



2. 배분예상액 검토

매 각 예 정 가 액		비 고 (잔여금 처리방법 등)	
배 분 예 상 액	계		
	강 제 징 수 비		
	선 순 위 채 권 액		
	국세·가산금	압 류 관 련	
		교 부 청 구	
후 순 위 채 권 액			
잔 여 금			

(주) : 우선채권 결정기준은 「국세기본법」 제35조, 제36조, 제37조 등에 의하고, “채권자”란  
의 금융기관 경우는 지점 표시. 개인은 주소를 기재

※ 우선채권 결정기준일(「국세기본법」 제35조)

-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(중간예납 법인세, 예정신고 납부 부가  
가치세 포함) : 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
- 정부가 결정, 경정 또는 수시부와 결정하는 경우 :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고지서 발송일
-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및 인지세 : 납세의무 확정일
-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양도담보 재산에서 징수하는 경우 : 납부고지서 발송일
-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경우 : 압류등기(등록)일